

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
운영 지원 출연안



구 미 시

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,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우수 인재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 여건을 조성하여 구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어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 상 기 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(동선동2가)
- 출연예정액 : 150백만원(운영비)

나. 주요 사업

-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
 - 운 영 비 : 300백만원(출연금 150, 입사생수입 150)
 - 운영내용 : 인건비, 운영비, 제세공과금 등

다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안정적인 주거와 면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, 입학생 편의를 확대하고 학숙 운영을 효율화하여 지역 인재육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(3)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
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
사업

② ~ ③ (생략)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
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□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
제7조(기금 출연)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
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청년청소년과
입 안 자	과 장	현 명 숙
	담 당	전 유 향
	담 당 자	오 연 수 (480-2713)